

2019.07.

2019년 세법개정안 - 부가가치세

1. 부동산신탁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규정 보완 (부가법 §10 ⑧, 부가령 §21의2)

□ 개정 전

신탁재산을 수탁자 명의로 매매시 원칙적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이나, 담보신탁으로서 위탁자에 대한 채무이행을 위해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 한하여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임

□ 개정내용

납세의무자를 수탁자로 하는 예외 규정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탁업자가 지정개발자로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추가

□ 개정의 효과

정비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신탁회사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이행하도록 하여 위탁자와 수탁자의 부가가치세 관련 업무 효율성 상승

□ 적용시기

2020. 1. 1. 이후 신탁재산을 수탁자 명의로 매매하는 분부터 적용

2. 복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인하 (부가세법 §60 ②)

□ 개정 전

둘 이상의 사업장을 보유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장이 아닌 자신의 다른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 2%를 부과

□ 개정내용

상기와 같이 둘 이상의 사업장을 보유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장이 아닌 자신의 다른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하였으나 그 위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것으로 보아 1% 가산세율 적용하는 대상에 명시

□ 개정의 효과

지점 또는 본점이 공급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곳이 아닌 다른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명시적으로 적용되는 가산세는 감소하였으나 이로 인해 과세관청은 착오나 과실로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로 보아 가산세 적용을 제외(부가령 §108 ③)하는 것을 더욱 좁게 해석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음

□ 적용시기

2020. 1. 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3. 대손세액공제 적용기한 확대 (부가령 §87 ②)

□ 개정 전

공급일로부터 5년 이내 대손이 확정된 공급가액에 대해서만 매출세액에서 차감하였음

□ 개정내용

공급일로부터 10년 이내 대손이 확정된 매출채권의 부가가치세까지 대손세액공제받을 수 있도록 개정

□ 개정의 효과

소송 등으로 시간이 지연되어 공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대손이 확정된 경우 대손세액을 받을 수 없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이 대손세액공제는 시행일 이후 대손이 확정되는 분부터 적용이 가능하여 시행일 이후 대손이 확정되고 공급일로부터 5년 초과 10년 이하로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 추가로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함

□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대손 확정되는 분부터 적용

4.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적용 대상 확대 (부가령 §91의2)

□ 개정 전

다음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중견기업이 법인세 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 만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관세법」에 따라 수입신고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세액을 정산하여 납부

- 수출비중 30%(중견기업 50%) 이상 또는 수출액 100억원 이상
- 최근 3년간 계속 사업을 경영하고, 관세·조세범처벌 사실이 없을 것
- 최근 2년간 관세·국세체납 및 납부유예 취소사실이 없을 것

□ 개정내용

법인세 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 만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신청기한을 연장하였으며, 체납이 발생하였으나 납부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 납부한 경우 역시 납부유예 적용 대상에 포함함

□ 개정의 효과

납부유예 신청기간이 연장되었으며, 최근 2년 이내 일시적인 자금경색 등으로 체납이 발생했던 경우 역시 납부유예 신청할 수 있게 됨

□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납부유예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CONTACT



전영준 변호사

02-528-5661

yjchun@yulchon.com



황지혜 세무사

02-528-5587

jihyehwang@yulchon.com



**INNOVATIVE
LAWYERS2018**
ASIA-PACIFIC WINNER



NATIONAL FIRM OF THE YEAR
SOUTH KOREA
CHAMBERS ASIA-PACIFIC AWARDS

Yulchon LLC

Korea | Vietnam | China | Myanmar | Russia | Indonesia*

* in association with Roosdiono & Partners

[구독신청](#) | [율촌 간행물 더 보기](#) | [Contact Us](#)

법무법인(유) 율촌의 뉴스레터는 일반적인 정보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되므로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 율촌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